

# 「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발 의 자: 이상호 의원 외 19인

### 2. 제안이유

-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안전 및 화재 예방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상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전통시장 화재 안전 사업 지원 규정 신설(안 제48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0조
  - 「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6조의2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전통시장·상점가 등의 화재예방 시설의 개선 사업과 화재공제 가입·화재복구 등 화재 안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화재 발생 후 피해 상인에 대한 사후적 지원뿐 아니라 화재위험 점검 및 아크 차단기<sup>1)</sup> 설치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성 확보 및 시설의 개선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아크차단기의 설치와 화재공제 가입 등에는 예산의 수반이 예상되는 바, 조례 개정에 따른 구체적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의 확보와 효과적·일괄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---

1) 아크차단기 : 전기 배선 및 전기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아크 (스파크) 현상을 감지하고 이를 차단하여 전기화재를 예방하는 전기안전장치